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2월 27일, 한병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6년 3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2026.03.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3.27.) 상정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4.02.)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4.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5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2026.04.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병도의원)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사전신고 및 공표·보도 전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이 증가하면서 무분별하고 질적 수준이 낮은 선거여론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공표·보도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선거여론조사를 사전에 신고한 경우에도 이를 공표·보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리대상에 벗어나게 되는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대상 기관 범위 조정, 공표·보도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여론조사를 사전에 서면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 중에서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를 제외하고, 신문사업자는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로 한정함(안 제108조제3항).

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신고하였으나, 공표·보도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108조제14항 및 제261조제6항제5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조문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 요지경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